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

편의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8. 29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발 의 자: 남완현 의원 외 1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남완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,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조례의 기본원칙(안 제3조)
-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(안 제4조~제5조)

- 지원 기준 및 절차(안 제6조)
-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8조)
-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- 본 조례안은
 - 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,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휴직 중, 정직·직위해제 중,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에서는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,
 -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각각 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,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4조, 제21조의2 등 상위 법령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공무 수행 시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신체적·정신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

편의지원 조례

(남완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.

발 의 자: 남완현, 최봉희 의원(2인)

찬 성 자: 유승용, 우경란 의원(2인)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,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조례의 기본원칙(안 제3조)
- 다.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지원 기준 및 절차(안 제6조)
- 마.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8조)
- 사.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(안 제9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,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공무원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 또는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중증장애인공무원”이란 제1호의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“근로지원인”이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·장비(이하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이라 한다)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
2. 정직,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
3.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

제5조(지원범위)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
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
3.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
4.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 기준 및 절차)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지원방법)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,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
2.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
3.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4.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)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

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